

#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4.

발의자 : 하태경 · 김삼화 · 박병석

송옥주 · 오신환 · 유의동

이석현 · 이용득 · 이용주

정병국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‘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’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,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5조

의3, 제27조제2항제10호의2, 제66조제9호의5 신설).

##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폐기물처리업의 안전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제27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
제66조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5.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25조의3(폐기물처리업의 안전 기준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</p>
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(생략)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 1. ~ 10. (생략)	<p>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의2.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</p>
<u>&lt;신 설&gt;</u>	

	<u>경우</u>
11. ~ 20. (생 략)	11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66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66조(별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의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~ 9의4. (현행과 같음) <u>9의5.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</u> <u>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</u> <u>한 자</u>
10. ~ 14. (생 략)	10. ~ 14. (현행과 같음)